

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658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65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86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 선고 2020. 12. 1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8671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76,7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취지를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5행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9, 27,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이재덕

판사홍준서